

팔란티어 AIP NOW 데이터 보호 부록 (“DPA”)

최종 수정일: 2024년 5월

해당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동의함”(또는 이와 동등한 옵션)을 선택하거나 팔란티어 기술(본 계약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의 일부를 설치, 실행, 다운로드, 접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귀하(“귀하” 또는 “귀하의” 또는 “허용된 사용자”)는 본 DPA를 읽었으며, 본 DPA의 조건을 이해하였고, 귀하가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자격으로, 또는 귀사가 대리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본 DPA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며, 해당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되고, 본 DPA의 당사자가 됨을 확인합니다. 귀하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본 DPA를 체결하는 경우, 귀하는 제3자나 법인을 대리하거나 또는 그의 지시를 통해 팔란티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 조직 또는 교육 기관과 같은 법인을 대신하여 본 DPA를 체결하는 경우, 귀하는 귀하가 해당 법인을 대리하여 본 DPA의 조건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법적 대표자임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귀하가 본 DPA의 모든 조건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동의함”(또는 이와 동등한 옵션)을 선택하지 마시고 팔란티어 기술의 일부라도 설치, 실행, 다운로드, 접속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의 승낙은 본 DPA의 모든 조건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명시적인 전제 조건으로 하며, 다른 모든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조건들이 청약으로 간주되는 경우, 승낙은 본 명시적으로 본 조건들에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본 DPA의 조건에 동의하는 고객(“고객”)과 본 계약의 서명자인 Palantir Technologies 법인(“팔란티어”; 각각 “당사자” 및 총칭하여 “당사자들”)은, 고객의 서비스 사용을 포함한 팔란티어 기술의 사용 및 팔란티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관련 전문 서비스의 제공을 규율하는 계약(예: 팔란티어 서비스 이용약관 및 주문서), 그리고 이에 첨부된 모든 부속 문서, 주문서, 부속서 및 별첨 (총칭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DPA는 본 계약을 보완하고, 본 계약에 편입되며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을 대신하여 팔란티어가 처리하는 모든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한, 팔란티어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DPA에서 사용되었으나 정의되지 않은 모든 대문자 용어는 본 계약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습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과 본 DPA의 조항 간에 의미상 충돌이 있는 경우, 본 DPA의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정의

1.1 다음 대문자로 표시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정 국가**”란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고 해당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국가의 감독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간주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 “**계열사**”는 직간접적으로 당사자를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당사자가 소유 또는 지배되거나 당사자와 공동으로 소유 또는 지배 하에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배’는 법인의 경영 또는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소유’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기타 동등한 의결권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란티어와 관련하여 계열사는 별첨 A, 파트 II에 나열된 모든 법인을 포함하며,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수시로 추가될 수 있는 기타 팔란티어 계열사들도 포함됩니다.;

- “기입사항”는 본 DPA의 별첨 D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법률상 “처리자” 또는 “사업자” 또는 이에 개인정보처리자 유사하거나 동등한 용어를 포함합니다;
- “고객 개인정보”는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고객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 “데이터 사고”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팔란티어가 관리하거나 달리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고객 개인정보의 우발적 또는 위법적 파기, 손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으로 이어지는 팔란티어의 보안 위반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이란 관련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관할 기관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감독 기관, 법무장관, 주 개인정보 보호 기관 또는 데이터 보호법을 집행하는 모든 정부 기관 또는 기관 산하 부서를 포함합니다;
- “데이터 보호법”이란 다음과 같이 본 계약에 따라 팔란티어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보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전자 통신 및 마케팅 법과 관련하여 수시로 개정되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al. Civ. Code § 1798.100 이하, 이하 “CCPA”);
 - 2020년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 권리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이하 “CPRA”);
 - 개인정보의 처리 및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에 관한 2016년 4월 2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Regulation (EU) 2016/679)으로, 지침 95/46/EC를 폐지한 법령, 이하 “EU GDPR”);
 - EU GDPR을 2018년 영국 유럽연합(탈퇴)법(UK 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에 따라 개정 및 통합하여 영국법에 포함시킨 법령, 이하 “UK GDPR”; 그리고
 - 1992년 6월 19일 제정되고 이후 개정되거나 대체된 스위스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Switzerland Federal Data Protection Act), 이하 “FDP”.
- “데이터 보호 책임자”란 조직의 데이터 보호법 준수를 보장하고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정보 주체”란 개인정보와 관련된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및 기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등한 용어를 포함합니다;
- “DPA 효력 발생일”이란 본 계약의 효력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 “EEA”는 유럽경제지역을 의미합니다;
- “EU 표준 계약 조항 (EU SCCs)”는 위원회 이행결정 2021/914에 따라 유럽 위원회가 승인한 유럽경제지역(EEA)로부터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준 계약 조항을 의미하며, 이후 이를 대체하는 기타 조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개인정보”는 (a) (i)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 및/또는 (ii)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법인(해당 정보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와 유사하게 보호되는 경우)과 관련된 모든 정보, (b)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 “개인식별정보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거나 유사한 취급을 받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처리”는 수집, 기록, 조직, 구조화, 저장, 조정 또는 변경, 검색, 상담, 사용, 이전에 의한 제공, 보급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 정렬 또는 조합, 제한, 삭제 또는 파기 등, 자동 수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에 대해 수행되는 모든 작업 또는 작업 집합을 의미합니다. “처리”, “처리하는” 및 “처리된”이라는 용어는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경우 이는 “수탁자”, “서비스 제공자”, “계약자” 및 해당되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책임을 다루는 동등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요청”이란 정보주체 또는 그를 대신하는 자가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 “제한적 이전”이란 해당 데이터 보호법(또는 데이터 보호법의 데이터 이전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데이터 이전 계약의 조건)에 따라, 표준 계약 조항과 같이 아래 제14조에 따라 설정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한, 이전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국가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재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안 문서”란 팔란티어가 직접 또는 이를 대리하여 수시로 제공하는 문서로서, 서비스에 적용되는 보안 기준을 설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판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금전적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판매, 임대, 공개, 보급, 이용 가능하게 제공, 이전,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는 원 계약 및 본 DPA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 “공유”란 금전적 또는 그 밖의 대가의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이 교환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교차 맥락 기반 행동 광고를 위해 제3자에게 판매, 임대, 공개, 보급, 이용 가능하게 제공, 이전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구두, 서면,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위 수탁자”는 본 계약, 별첨 A 및 본 DPA의 기타 관련 별첨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팔란티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수탁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의미합니다.
- “표준 계약 조항(“SCC”)”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 또는 (b) 해당 국가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규율하는 데이터 보호 법률은 존재하지만 승인된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이 없는 경우, EU SCC가 적용되며, 각각 경우에 적절한 기입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와 관련하여 둘 이상의 형태의 승인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i) 고객이 고객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 역할을 하는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수탁자로의 이전에 적용되는 형태의 조항; (ii) 고객이 고객 개인정보의 수탁자 역할을 하는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수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이전에 적용되는 형태의 조항; 및
-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는 본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의무에 따라 팔란티어가 시행하는 추가적인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2. 기간

2.1 본 DPA는 DPA 발효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에 따라 팔란티어가 모든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반환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 범위 및 적용

3.1 본 DPA는 본 계약에 통합되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팔란티어가 처리하는 모든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팔란티어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원 계약의 조항과 본 DPA의 조항 간에 의미상 충돌이 있는 경우, 본 DPA의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당사자의 역할

4.1 고객 및 관련 고객 계열사는 고객 개인정보의 수탁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하위 수탁자로 팔란티어를 지정하고 지시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각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양 당사자 사이에서 본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또는 고객이 제3자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며, 팔란티어는 수탁자(또는 하위 수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4.3 고객이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수탁자(또는 하위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경우, 고객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원 계약 및 본 DPA를 체결할 수 있고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객 지침(아래에 정의됨)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을 팔란티어에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4.4 고객이 팔란티어 또는 팔란티어 계열사의 직원인 경우, 고객은 자신이 팔란티어 또는 팔란티어 계열사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팔란티어 기술을 통한 고객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행동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4.5 고객이 제3자 개인정보처리자와 공동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고객은 팔란티어 기술 사용과 관련된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행위가 해당 제3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루어지며, 해당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여 수행됨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4.6 고객이 새로운 사용자를 팔란티어 기술에 소개하는 경우(해당 사용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던 제3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던), 고객은 해당 사용자가 그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팔란티어와 직접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하며(해당 팔란티어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DPA 포함), 그러한 사용자가 팔란티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4.7 처리의 대상 및 세부 사항은 원 계약 및 본 DPA에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별첨 B(고객 개인정보 처리의 대상 및 세부 사항) 및 관련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이 포함됩니다.

4.8 팔란티어는 남용 또는 악의적인 사용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본 계약 및 AIP Now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상세히 명시된 바에 따라, 프롬프트 및 출력물을 사용 데이터로 처리합니다.

5.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

5.1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객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 및 그러한 처리와 관련하여 팔란티어에 제공하는 모든 지시가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률을 모두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2 고객은 팔란티어에게 다음의 상황에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a) 본 계약 및 문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b) 본 계약 및 문서에 따라 고객 또는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통해 고객이 추가로 개시한 처리의 경우, (c) 원 계약 또는 본 DPA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 지시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기타 서면 지침에 추가로 문서화되고 팔란티어가 본 DPA의 목적을 위한 지침으로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총칭하여 "고객 지침"). 고객은 위 (c)항에 따라 발행된 추가 고객 지침으로 인해 팔란티어가 고객에게 추가 비용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5.3 고객은 팔란티어 기술의 이용 및/또는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관련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데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고객 개인정보의 정확성, 품질 및 적법성, 고객이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 고객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객의 지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신(또는 그 개인정보처리자가)이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유효한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팔란티어가 본 DPA, 원 계약 및 고객 지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수령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또는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고지 및 동의, 인가, 승인 및/또는 합의(고객이 수탁자 또는 하위 수탁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의 동의 및 합의를 포함함)를 제공하였거나(또는 제공되도록 하였거나), 수령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5.4 고객은 서비스 사용, 특히 서비스 내 개인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5.5 고객 개인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5.1 관련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그러한 정부 관련 식별자의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 관련 식별자(해당 용어가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정의된 경우);

5.5.2 아동(해당 관할권에서의 관련 성년 연령에 따라 정의됨)과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거나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5.5.3 명시적인 승인 없이 다른 개인정보 관리자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정보.

6. 팔란티어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6.1 팔란티어는 고객의 지침 및 서비스 내에서 해당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고객이 승인한 기타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팔란티어 기술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목적("사업 목적")을 위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본 계약 및

본 DPA의 조건과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률에서 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명확히 하자면, 고객은 팔란티어에게 본 계약 및 고객 지침에 명시된 제한적이고 특정된 사업 목적에 한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팔란티어는 고객 지침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지하며, 해당 책임자는 privacy@palantir.com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b) 고객 지침에 따른 사업 목적의 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사업적 관계 외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또는 보유, 이용, 공개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법률 또는 규정, 사법·정부·규제 기관(소환장을 포함 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요청이나 명령에 따라 달리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팔란티어는 해당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에게 그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통지합니다(단, 법적으로 그러한 통지가 금지된 경우는 제외).;

(c)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출처에서 수신하거나 정보주체와의 자체 상호 작용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단, 팔란티어는 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고객 개인정보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d)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팔란티어의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및 복원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호조치를 구현합니다. 팔란티어는 기술적 및 조직적 보호조치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업데이트는 원래의 보호조치보다 보호 수준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원이 팔란티어에게 데이터 보호 법이나 본 계약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초과하는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객 또는 고객을 대리하는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데이터 보호 법을 위반한 행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로 관련 기술적 및 조직적 보호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팔란티어의 해당 지원 제공 의무는 고객이 그러한 추가 지원에 대해 팔란티어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본 DPA에 따른 팔란티어의 보안 의무는 관련 데이터 보호 법에 따른 고객의 자체적인 보안 의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 하위 수탁자(아래에 정의됨)를 포함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팔란티어에 의해 승인된 모든 사람이 본 DPA, 원 계약에 명시된 또는 기타 데이터 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f)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보관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종료 시, 관련 서비스 수행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g)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고객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6.2 고객은 고객 지침의 일환으로, 처리의 대상 및 기간, 처리의 성격과 목적, 개인정보의 유형 및 정보주체의 범주를 팔란티어에게 지시하여야 하며, 이때 처리의 맥락에서 수탁자가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및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본 문서에 달리 정함이 있더라도, 고객은 팔란티어에 대한 어떠한 고객 지침을 포함하여, 고객의 행위 또는 부작위가 팔란티어로 하여금 데이터 보호 법률을 위반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6.3 고객은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의무의 맥락에서 처리에 적합한 보안 수준을 평가했으며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가 그러한 평가와 일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은 또한, 팔란티어가 고객이 팔란티어에 제공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팔란티어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 구체적인 개인정보에 대해 평가하거나 인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결과 팔란티어가 제안한 기술적 및 조직적 보호조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며, 해당 보호조치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위험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팔란티어는 평가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7. 하위 수탁자

7.1 고객은 (a) 별첨 A에 나열된 법인 및/또는 본 DPA에 명시된 특정 추가 서비스 및 (b) 모든 팔란티어 계열사의 하위 수탁자로서의 참여를 수시로 승인하지만, 팔란티어는 그러한 하위 수탁자가 어떠한 고객 개인정보도 처리하기 전에, 해당 하위 수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본 부록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거나, 데이터 보호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7.2 제7.3조에 따라 고객은 일반적으로 추가 하위 수탁자("추가 하위 수탁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팔란티어에게 부여하지만, 그러한 추가 하위 수탁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팔란티어는 본 DPA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거나

데이터 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부과하는 추가 하위 수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7.3 팔란티어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추가 하위 수탁자의 사용을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된 하위 수탁자 목록을 별첨 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ttps://palantir.pactsafe.io/aip-now-6493.html#template-mykdyildz>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고객에게 해당 업데이트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이 통지가 GDPR 제28.2조 및 SCC 제9항의 통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고객이 그러한 추가 하위 수탁자에 의한 고객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고객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7.4 데이터 보호법이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팔란티어는 본 7조와 관련된 하위 수탁자의 의무(“하위 수탁자의 데이터 보호 책임”)의 이행에 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며, 팔란티어는 그러한 의무의 재이행하거나 재이행 되도록 하며, 고객은 그러한 재이행으로 인해 하위 수탁자의 데이터 보호 책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팔란티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청구권이 제한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8. 감사

8.1 팔란티어는 제3자 감사인을 통해 보안 조치의 적절성을 검증합니다. 이 감사는 독립적이고 평판이 좋은 제3자 감사인이 팔란티어의 선택과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조직 통제 2(SOC2) 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계 표준에 따라 최소 매년 수행하며, 그 결과 감사 보고서(“보고서”)가 생성되고, 이는 팔란티어의 비밀 정보가 됩니다. 또한 서비스 및 운영은 <https://www.palantir.com/information-security/> 의 “규정 준수 및 인증” 탭에 명시된 표준 및 인증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됩니다 (“인증”).

8.2 고객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팔란티어는 고객에게 보고서의 기밀 요약본, 인증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 및 본 DPA 제10조에 명시된 책임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이 본 DPA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의무를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3조에 따라, 데이터 보호법, 표준 계약 조항 또는 본 계약에서 고객에게 보고서 및 책임 정보 외에 팔란티어 시설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팔란티어는 본 계약, 표준 계약 조항 또는 데이터 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범위까지 고객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본 DPA상의 조건의 준수에 대한 팔란티어의 감사를 고객이 허용해야 합니다.

8.3 본 8조에 따라 (그리고 8.2조에 따라 그러한 감사가 승인된 경우) 팔란티어 시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고객은, 팔란티어에 통지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항상 사전에 감사의 합리적인 날짜, 기간 및 범위, 감사자의 신원 및 자격, 해당 감사 범위 내 정보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성 통제에 합의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감사 요청을 거부하거나 고객이 감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모든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 보호법 또는 본 DPA에 따라 그러한 감사가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임에도, 팔란티어가 감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객은 본 조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본 제8조에 따른 감사의 범위는 고객 개인정보 및 그러한 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팔란티어 시스템 및 시설로 제한됩니다.

8.4 제8조에 따라 고객, 고객의 감사인 또는 본 DPA에 따라 상기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부여된 기타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된 모든 정보는 팔란티어의 비밀정보로 간주됩니다.

8.5 팔란티어가 본 DPA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고객은 고객이 해당 위반이 시정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모든 고객 개인정보 처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본 DPA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팔란티어는 그러한 결정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9.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과의 협력 및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9.1 팔란티어는 팔란티어가 수행하는 처리의 성격과 팔란티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의 비용으로,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협력합니다.

9.2 서비스의 성격과 팔란티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팔란티어는 보고서, 책임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위험 평가’, ‘개인정보 영향 평가’, ‘데이터 보호 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포함) 및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에 사전 협의 또는 의무적 제출과 관련한 고객의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10 책임성

데이터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팔란티어는 고객을 대신하여 수행한 모든 범주의 처리 활동에 대한 전자 기록을 유지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수탁자 및 하위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 정보;

(b) 수행되는 처리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

(c) EEA 또는 영국 외부 지역 또는 국제 조직으로의 고객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적절한 보호 조치에 대한 문서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d)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된 기술적 및 조직적 보안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함께 “책임 정보”라고 합니다.

11. 정보주체의 권리

11.1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팔란티어가 정보주체 또는 그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권리에 관한 요청, 청구 또는 불만 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제공된 정보로부터 해당 요청, 청구 또는 불만 사항이 고객 및 고객 개인정보

보와 관련된 것임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팔란티어는 해당 요청, 청구 또는 불만 사항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11.2 본 서비스는 고객이 고객 개인정보를 검색, 수정, 삭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기능 및 기능을 포함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로 이러한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데이터 사고

12.1 팔란티어는 데이터 사고가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또는 해당 데이터 보호법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인지한 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데이터 사고에는 팔란티어의 보안 또는 하위 수탁자의 보안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 또는 부작위, 포트 스캔, 공인 침투 테스트 및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고객 지침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처리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팔란티어가 본 조 제12.1에 따라 데이터 사고를 통지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것은, 해당 데이터 사고와 관련하여 팔란티어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2 팔란티어는 데이터 사고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합리적인 협조 및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협조합니다: (a) 고객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b) 데이터 사고로 영향을 받은 정보주체 또는 감독기관에 대해 고객이 적절한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요청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 단, 고객은 법률 자문, 소송 또는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의 적용을 포함한 효과적인 사이버 사고 대응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사고와 관련하여 팔란티어와 선의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그러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효과적이고 필요한 사고 대응 및 피해

완화 조치를 유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공적 발표의 형식 및 방법에 대해서도 팔란티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2.3 본 제12조에 따라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팔란티어의 비밀 정보이며, 또한 팔란티어가 본 제12조에 따라 데이터 사고를 통지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 또는 전문 서비스(해당되는 경우)의 이행과 관련하여 팔란티어나, 해당되는 경우 그 하위 수탁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3. 정보의 이전

13.1 팔란티어는 고객이 설립된 국가 외의 국가, 즉 팔란티어나 그 하위 수탁자가 시설, 직원 또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2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에 제한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즉 고객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개인정보가 적정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경우에는:

(a)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 일련의 SCC를 체결합니다. 적용 가능하고 별첨 D에 명시된 대로 해당 SCC 및 모든 필수 기입사항은 본 DPA에 통합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객(이전자)과 팔란티어(수령자) 간에 적용됩니다;

(b) 팔란티어는 서비스 수행을 목적으로 한 팔란티어 계열사 간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향후 이전과 관련한 SC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c) 팔란티어는 팔란티어와 제3자 하위 수탁자 간의 모든 고객 개인정보의 이전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SCC에 상응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팔란티어와 해당 제3자 하위 수탁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13.3 본 DPA 또는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표준 계약 조항에 따른 팔란티어 또는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14 책임

14.1 제14.2조에 따라, 본 계약 및 표준 계약 조항과 관련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계열사에 대하여 각 당사자 및 그 계열사가 부담하는 총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된 책임 한도 및 책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DPA의 어떠한 내용도 책임의 배제 및/또는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책임과 관련된 계약 조건을 수정, 무효화 또는 개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14.3 고객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로드하는 모든 고객 데이터가 정확하고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데이터와 관련하여 고객이 본 조항 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 책임, 벌금, 과징금 및 비용(제3자로부터 발생한 것을 포함함)에 대해, 고객은 팔란티어를 방어하고 면책해야 합니다.

15. 준거법 및 관할권

15.1 양 당사자는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표준 계약 조항 또는 기타 허용된 준수 메커니즘을 이행하거나 준수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본 DPA의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15.2 본 DPA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계약 외 분쟁 또는 청구 포함), 또는 그 대상이나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상 준거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데이터 보호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DPA가 다음 중 하나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거나 그러한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 (a)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 현재 그러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본 DPA는 아일랜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 (b) 영국 법률의 경우, 본 DPA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그리고/또는
- (c) 기타 관할권의 법률의 경우, 본 DPA는 해당 법률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관할권의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15.3 양 당사자는 본 DPA 및 이에 따라 체결되는 문서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본 계약에 명시된 포럼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합의합니다. 단, 데이터 보호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의 의무 요건에 따라 본 DPA 및 이에 따라 체결되는 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다음의 법정에서 심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a)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법정에서 심리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아일랜드에서 심리되고; (b) 영국 내의 법정에서 심리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심리되며; (c) 기타 대체적인 법정에서 심리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대체 법정에서 심리됩니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법정의 관할권에 취소할 수 없이 복종하며, 해당 법정이 부적절한 장소이거나 불편한 법정이라는 이유로 소송 제기예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6. 일반 조항

16.1 본 DPA의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 DPA의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며 효력을 유지합니다.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은 (i) 당사자의 의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그러한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ii) 해당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부분이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해석해야 합니다.

16.2 팔란티어는 데이터 보호법의 변경으로 인해 요구되는, 국외 이전을 포함한, 본 DPA의 변경 사항을 수시로 고객에게 서면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면 통지가 고객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5일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첨 A

승인된 하위 수탁자 목록

제1부 - 하위 수탁자

팔란티어 서비스 이용약관 및 팔란티어 데이터 보호 부록(또는 해당되는 경우, 고객과 팔란티어 간의 대체 서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alantir Technologies Inc.) 및 그 계열사는 제3자 데이터 수탁자(“제3자 하위 수탁자”) 및 팔란티어 계열사를 사용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었으나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본 계약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제3자들은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3자 하위 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된 자들입니다.

승인된 제3자 하위 수탁자				
하위 수탁자	목적	등록 주소	지역 및 국가	국외이전방식
Amazon Web Services, Inc.	클라우드 호스팅 및 인프라, 알림 및 암호화된 알림 서비스, AI 서비스.	410 Terry Avenue North, Seattle, WA 98109, USA(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테리 애비뉴 노스 410번지 (우편번호 98109))	고객이 주문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선택한 국가	표준 계약 조항
Microsoft Corporation	클라우드 호스팅 및 인프라, AI 서비스 (Microsoft Azure)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 USA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 (우편번호 98052))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상의 소재지는, 고객이 주문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선택한 지역으로 합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상의 소재지는 East US, South Central US, West Europe 및 향후 사용 가능해지는 기타 Azure 지역입니다.	표준 계약 조항
Google LLC	클라우드 호스팅 및 인프라(Google 클라우드 플랫폼) 및 AI 서비스.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94043 CA, USA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시 앰피시어터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상의 소재지는, 고객이 주문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선택한 지역으로 합니	표준 계약 조항

		<p>파크웨이 1600번지 (우편번호 94043))</p>	<p>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상의 소재지는 Google Vertex AI의 생성형 AI 기능이 제공되는 모든 지역 및 향후 사용 가능해지는 기타 지역입니다.</p>	
Proofpoint, Inc.	경고 및 암호화된 알림 서비스.	<p>892 Ross Drive, Sunnyvale, CA 94089, USA</p> <p>(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시 로스 드라이브 892번지 (우편번호 94089))</p>	<p>고객이 주문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선택한 바에 따릅니다.</p>	표준 계약 조항
Microsoft Corporation	ID 공급자로서의 사용자 인증(고객이 선택한 ID 공급자로 선택한 경우).	<p>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 USA</p> <p>(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 (우편번호 98052))</p>	미국	표준 계약 조항
OpenAI LLC	AI 서비스	<p>3180 18th Street, San Francisco, CA 94110, USA</p> <p>(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18번가 3180번지 (우편번호 94110))</p>	<p>AI 서비스 제공 지역은 미국 및 향후 가능한 기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p>	표준 계약 조항
Oracle America, Inc.	클라우드 호스팅 및 인프라.	<p>500 Oracle Parkway, Redwood Shores, CA 94065</p>	<p>고객이 주문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p>	표준 계약 조항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쇼어스 오라클 파크웨이 500번지 (우편번호 94065))	선택한 바에 따릅니다.	
--	---	--------------	--

제2부 - 팔란티어 계열사

데이터 보호법 및 본 계약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가 팔란티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고객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및/또는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로서, 본 문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팔란티어 계열사를 팔란티어의 하위 수탁자로 지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팔란티어와 해당 계열사는 표준 계약 조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해당되는 경우 팔란티어의 통제 및 지시에 따라, 팔란티어가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수행됩니다.

별첨 B

고객 개인정보 처리의 대상 및 세부 사항

팔란티어 개인정보 보호 담당 연락처

privacy@palantir.com

개인정보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범주

정보주체에는 서비스를 통해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고객 또는 고객의 사용자에게 의해(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팔란티어에 제공된 개인이 포함됩니다.

고객 개인정보의 범주

고객 또는 고객의 사용자에게 의해 또는 고객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통한 것을 포함), 그 정보의 처리를 위해 팔란티어에 제공되는 고객 개인정보

처리 대상

팔란티어의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 제공 및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처리의 성격 및 목적

팔란티어는 고객에게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달리 강제되는 경우, 본 DPA의 약관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 기간

본 계약의 기간동안 계속되며, 계약 만료 이후에도 팔란티어가 본 계약(본 DPA 포함), 고객 지침,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고객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하위 수탁자에 의한 처리 대상, 성격 및 기간

별첨 A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하위 수탁에 의한 처리 기간은 바로 위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별첨 C - 아폴로 서비스

다음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폴로 서비스”는 사용자가 독립적인 환경에서 여러 버전의 팔란티어 기술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엔드투엔드 연속 배포 SaaS 솔루션을 위해 주문서에서 고객이 선택한 특정 서비스를 의미하며, 본 DPA의 별첨 A 및 별첨 B의 적용을 제외하고 아폴로 서비스에 대한 본 별첨 C에 독점적으로 설명된 바에 따릅니다;

별첨 C-1

승인된 하위 수탁자 목록

제1부 - 하위 수탁자

다음 제3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아폴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3자 하위 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된 제3자 하위 수탁자				
하위 수탁자	목적	등록 주소	지역 및 국가	국외이전 방식
Amazon Web Services, Inc.	클라우드 호스팅 및 인 프라, 알림 및 암호화된 알림 서비스	410 Terry Avenue North, Seattle, WA 98109, USA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테리 애비뉴 노스 410번지 (우편번호 98109))	주문서 또는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고객이 선택한 바에 따릅니다.	표준 계약 조항
Microsoft Corporation	ID 공급자로서의 사용자 인증(고객이 선택한 ID 공급자로 선택한 경우).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 USA	미국	표준 계약 조항

	(미국 워싱턴주 레드 먼드시 원 마이크로소프트 웨이 (우편번호 98052))	
--	--	--

제2부 - 팔란티어 계열사

별첨 A의 “파트 II - 팔란티어 계열사”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별첨 C-2

고객 개인정보 처리의 대상 및 세부 사항

아플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범주

정보주체에는 아플로 서비스를 통해 또는 고객 또는 고객의 사용자에게 의해(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팔란티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고객 개인정보의 범주

고객 또는 고객의 사용자에게 의해 또는 고객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아플로 서비스를 통한 처리를 위해 팔란티어에 제공되는 고객 개인정보. 고객 개인정보의 범주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및 ID와 같은 사용자 식별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처리 대상

팔란티어의 본 계약에 따른 아플로 서비스의 제공

처리의 성격 및 목적

팔란티어는 위에 명시된 고객 개인정보를 본 데이터 보호 부록(DPA)의 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그 목적은 아플로 사용자 계정 설정, 고객에게 아플로 서비스를 제공(관리되는 환경에 대한 취약점 스캔 포함),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처리 기간

본 계약의 기간 동안 계속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팔란티어가 본 계약(본 DPA 포함), 고객 지침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고객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삭제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하위 수탁자에 의한 처리 대상, 성격 및 기간

별첨 A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하위 수탁자에 의한 처리 기간은 바로 위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별첨 D

표준 계약 조항에 대한 추가 사항

다음 대문자로 표시된 용어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국 부록**”은 2018년 데이터 보호법 119A조에 따라 영국 정보 위원장이 발행한 EU SCC에 대한 국제 데이터 전송 부록 및 수시로 수정 또는 대체되는 모든 기타 부록을 의미합니다.

“**기입사항**”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i) EEA로부터의 이전과 관련된 EU 표준 계약 조항(“**EU SCC**”)에 대해:

a) 제7조 및 11조의 선택 문구가 삭제됩니다;

b) 해당 SCC의 제8.9조에서 (d)항 뒤에 다음 단락을 추가합니다:

“(e) 상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사는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범위와 매개변수로 제한됩니다.

감사가 실사를 포함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전 통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감사의 범위, 시기, 기간, 통제 및 증빙 요건에 대해 상호 합의하되, 이러한 합의 요건이 데이터 수령자가 감사 수행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호 합의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감사는 (i) 요청하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비용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직원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합리적인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ii)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독립 감사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사전에 승인한 당사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될 수 없고, (iii) 비밀유지계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 제9조에서 옵션 1을 삭제하고 그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d) EU SCC의 13(a)조에 해당하는 문구(해당 SCC의 대괄호 안의 지침에 따라 결정됨)는 유지되고 나머지 두 가지 대안은 삭제됩니다;

e) EU SCC 제17조에서 옵션 2를 삭제하고 아일랜드 법률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옵션 1을 완성하며, EU SCC 18(b)조에서 아일랜드 법원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옵션 1을 완성합니다;

f) 부속서 1에 명시된 당사자는 국외이전자로서의 고객과 수령자로서의 팔란티어의 이름으로 작성되고, 이전은 별첨 B 및 본 DPA에 따라 적용 가능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부속서에 설명된 대로, 감독 기관은 아일랜드 감독 기관으로, 부속서 II의 기술 및 조직 조치 목록은 기술 및 조직 조치로, 부속서 III의 하위 수탁자 목록은 별첨 A에 명시된 것으로 작성된다; 그리고

g) 발효일에 시행 중인 EU SCC를 대체하는 경우, 위에 명시된 것과 가장 유사하게 개정된 SCC로 보완해야 합니다.

(ii) EEA 이외의 다른 관할권으로부터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EU SCC와 관련하여 상기 (i)(a)-(g)에 명시된 보완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a) 해당 EU SCC 17조에서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양 당사자는 관련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의 필수 요건으로 EU SCC의 다른 준거법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영국 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17조은 해당 데이터 보호법이 해당 EU SCC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률의 세부 사항으로 완성됩니다;

b) 18(b)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다. “18(b) 양 당사자는 다른 국가, 주 또는 영토가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의 필수 요건으로서 EU SCC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원이 관할권이 된다는 데 동의하며, 이 경우 해당 EU SCC의 18(b)조는 데이터 보호법이 요구하는 국가, 주 또는 영토의 세부 사항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c) EU SCC에서 “유럽연합 외부에 위치한 제3자”에 대한 언급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자가 설립된 국가 또는 영토 외부에 위치한 제3자”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됩니다;

d) 해당 EU SCC에서 “회원국”에 대한 언급은 “데이터의 국외이전자가 설립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됩니다;

e) 해당 EU SCC에서 GDPR에 대한 모든 참조는 해당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에 대한 참조로 대체되며, GDPR의 조항 또는 개념에 대한 참조는 GDPR에서 이해되는 관련 용어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해당 데이터 보호법의 조항 또는 개념에 대한 참조로 대체됩니다;

f)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에 대한 모든 언급은 국외이전자의 설립 국가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됩니다;

g) 관련 데이터 보호법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기타 제3자 수익자 권리 또는 (b) 정보주체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의무 또는 책임에 대한 EU SCC의 모든 언급은 삭제되고 무시됩니다.

h) (i) ~ (viii)에 언급된 EU SCC에 대한 언급이 발효일 이후에 개정된 조항이나 교체 또는 이후에 승인된 조항 또는 문서에서 대체되는 경우, (ii)(a)-(h)에 제공된 수정 사항은 전자의 효과를 최대한 가깝게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그리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정 및/또는 보완됩니다.

(iii) 영국으로부터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SCC와 관련하여, EU SCC는 (i) <https://ico.org.uk/media/for-organisations/documents/4019539/international-data-transfer-addendum.pdf><https://ico.org.uk/media/about-the-ico/consultations/2620398/draft-ico-addendum-to-com-scc-20210805.pdf> 에 있는 정보 위원장의 “EU 위원회 표준 계약 조항에 대한 영국 부록” 또는 (ii) 정보 위원장이 수시로 발행할 수 있는 EU 표준 계약 조항에 대한 대체 부록(이러한 부록을 “**영국 SCC**”라 함)에 의해 수정된 대로 다음 항목(또는 (ii)의 경우 다음 항목과 가장 근접한 항목)을 보완하여 적용합니다:

a) 전술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i)(a)-(g)에 명시된 기입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b) 표 1은 국외이전자로서의 고객과 수령자로서의 팔란티어의 이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c) 표 2에서 선택된 EU SCC의 모듈은 아래에 명시된 SCC의 정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d) 표 4에서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음”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iv) 스위스로부터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SCC와 관련하여, EU SCC가 적용되며 (위 (i)(a) ~ (g)에서 정한 보완 사항들을 반영함), 다음 중 하나에 따라 수정된 형태로 적용됩니다: (a) 스위스 FDPIC의 2021년 8월 27일자 결정지침

https://www.edoeb.admin.ch/edoeb/en/home/latest-news/aktuell_news.html#-1259254222]에 따라, 스위스 FADPI가 적용되는 이전에 대하여 EU SCC에 적용되어야 할 수정사항을 반영한 경우, 또는 (b) 향후 FDPIC이 EU SCCs에 대하여 정한 수정사항에 관한 후속 결정(이러한 수정사항을 “스위스 SCCs”라 함)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v) 다른 국가로부터의 국외이전과 관련된 SCC와 관련하여 위의 (i)(a)-(g)에 명시된 기입사항을 적용하거나, 또는 해당 기입사항과 가장 유사한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타 기입사항을 적용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고객이 고객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아래 별첨 1에 규정된 모듈 2(개인정보처리자에서 수탁자로) 조건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고객 개인정보의 수탁자(또는 하위 수탁자)인 경우 아래 부록 D에 규정된 모듈 3(수탁자 대 수탁자) 조건이 적용됩니다. 표준 계약 조항의 모듈 2 및 모듈 3 모두에 대해 특정 용어의 선택 및/또는 필수 정보의 추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표준 계약 조항의 13(a)조에 해당하는 문구(표준 계약 조항의 대괄호 안의 지침에 따라 결정됨)는 유지되고 나머지 두 가지 대안은 삭제됩니다;

(b) 데이터 수령자가 본 계약의 별첨 A 및/또는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각각 명시된 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하위 수탁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표준 계약 조항 제9(a)조에 언급된 하위 수탁자의 “합의된 목록”입니다.

별첨 D의 부속서 1

표준 계약 조항

모듈 2: 개인정보처리자 대 수탁자

섹션 I

제1조

목적 및 범위

(a) 본 표준 계약 조항의 목적은 제3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시, 개인정보 처리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16년 4월 27일 이사회 규정 (EU) 2016/679(GDPR)([1])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b) 당사자:

(i) 부속서 I.A에 나열된 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기관 또는 기타 단체(이하 ‘법인(들)’)(이하 각 ‘데이터 국외이전자’).

(ii) 부속서 I.A에 나열된 바와 같이 본 조항의 당사자인 다른 법인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데이터 국외이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신하는 제3국의 법인(이하 각 ‘데이터 국외수령자’).

이 표준 계약 조항(이하 ‘본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c) 본 조항은 부속서 I.B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d) 본 표준 계약 조항에 포함된 부속서를 담고 있는 부록은 본 조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합니다.

제2조

조항의 효력 및 불변성

(a)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 제46조 제1항 및 제46조 제2항(c)에 따라 집행 가능한 정보주체 권리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수탁자로 또는 수탁자에서 수탁자로의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부록의 적절한 모듈 선택 또는 정보 추가 또는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수정되지 않는 한 규정 (EU) 2016/679 제28조 제7항에 따른 표준 계약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본 조항에 명시된 표준 계약 조항을 더 광범위한 계약에 포함하거나 다른 조항 또는 추가 보호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항이 직간접적으로 본 조항과 모순되거나 정보주체의 기본권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b)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에 따라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3자 수익자

(a)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제3자 수익자로서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대해 본 조항을 발동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i)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ii) 제8.1조 (b), 제8.9조 (a), (c), (d) 및 (e);

(iii) 제9조 (a), (c), (d) 및 (e);

(iv) 제12조 (a), (d) 및 (f);

(v) 제13조

(vi) 제15.1조 (c), (d) 및 (e);

(vii) 제16조 (e);

(viii) 제18조 (a) 및 (b).

(b) (a)항은 규정 (EU) 2016/679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4조

해석

(a) 본 조항에서 규정 (EU) 2016/679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는 해당 규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b)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의 조항에 비추어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c)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우선 순위

본 표준계약조항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관련 계약의 조항들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본 표준계약조항이 우선합니다.

제6조

이전(들)의 세부 사항

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 특히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주 및 이전 목적은 부속서 I.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도킹 조항

[의도적으로 공란으로 남김]

섹션 II - 당사자의 의무

제8조

데이터 보호 안전장치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증합니다.

8.1 지침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계약 기간 내내 그러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그러한 지시를 따를 수 없는 경우 즉시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8.2 목적 제한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추가 지시가 없는 한 부속서 I.B에 명시된 이전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8.3 투명성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요청 시 당사자가 작성한 부록을 포함하여 본 조항의 사본을 정보주체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부속서 II에 설명된 조치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사본을 공유하기 전에 본 조항의 부록 텍스트 일부를 편집할 수 있지만,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의미 있는 요약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정보주체에게 편집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집된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의 13조 및 14조에 따른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8.4 정확성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수신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 국외이전자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8.5 데이터의 처리 및 삭제 또는 반환 기간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의한 처리는 부속서 I.B.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며, 처리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후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 국외이전자를 대신하여 처리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인증하거나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대신 처리한 모든 개인정보를 반환하고 기존 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반환할 때까지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적용되는 현지 법률이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하고 해당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기간 동안만 데이터를 처리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는 제14조, 특히 제14조(e)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제14조(a)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내내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요건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8.6 처리의 보안

(a) 데이터 국외수령자 및 이전 중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해당 데이터의 우발적 또는 위법적인 파기, 분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이하 '개인정보 침해')으로 이어지는 보안 위반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보안 수준을 평가할 때 양 당사자는 기술 수준, 구현 비용,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및 목적,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특히 이전 중을 포함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암호화 또는 가명처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명 처리의 경우, 개인정보를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추가 정보는 가능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배타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합니다. 본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최소한 부속서 II에 명시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계약의 이행,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소속 직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비밀유지를 약속했거나 적절한 법적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위반 사실을 알게된 후 지체 없이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 침해의 성격에 대한 설명(가능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기록의 범주와 대략적인 수 포함),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거나 제안한 조치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초 통지에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후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d)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규정 (EU) 2016/679에 따른 의무, 특히 처리의 성격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관할 감독 기관 및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국외이전자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8.7 민감정보

이전 대상에 인종 또는 민족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드러내는 개인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유전정보 또는 생체정보, 건강 또는 개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 형사처벌 및 범죄와 관련된 정보(이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부속서 I.B.에 설명된 특정 제한 및/또는 추가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8.8 재이전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제3자에게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모듈에 따라 본 조항의 구속을 받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 외부에 위치한 제3자(2)(데이터 국외수령자와 동일한 국가 또는 다른 제3국, 이하 '재이전')에게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i) 재이전이 해당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EU) 2016/679 제45조에 따른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 이루어 지며, 해당 적정성 결정이 재이전을 포함하는 경우;
- (ii) 제3자가 해당 처리와 관련하여 (EU) 2016/679 규정 46조 또는 47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 (iii) 특정 행정, 규제 또는 사법 절차의 맥락에서 법적 청구의 성립,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재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 (iv)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이전이 필요한 경우.

재이전은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에 따른 다른 모든 보호 조치, 특히 목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8.9 문서화 및 규정 준수

-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에 따른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문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b) 양 당사자는 본 조항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처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의무의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제공하고,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간격으로 또는 미준수 징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되는 처리 활동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고 이에 기여해야 합니다. 검토 또는 감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보유한 관련 인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d)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거나 독립 감사인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구내 또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점검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통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 (e) 양 당사자는 감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b)항 및 제(c)항에 언급된 정보를 요청 시 관할 감독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하위 수탁자의 사용

- (a) 옵션 2 일반 서면 승인: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합의된 목록에 있는 하위 수탁자의 참여에 대한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일반 승인을 받습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의 추가 또는 교체를 통해 해당 목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14일 전에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하위 수탁자가 참여하기 전에 그러한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b)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데이터 국외이전자를 대신하여) 특정 처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하위 수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제3자 수익자 권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를 구속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서면 계약을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양 당사자는 본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제8.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가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하위 수탁자 계약서 사본 및 이후 수정본을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데이터 국

외수령자는 사본을 공유하기 전에 계약서의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d)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위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와 제3자 수익자 조항에 합의해야 하며,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법률에 따라 존재하지 않거나 파산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하위 수탁자 계약을 해지하고 하위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반환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의 권리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모든 요청을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해당 요청 자체에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규정 (EU) 2016/679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요청에 응답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정도뿐만 아니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처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부속서 II에 명시합니다.

(c) (a)항 및 (b)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구제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불만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연락처를 개별 통지하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b) 본 조항의 준수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와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문제를 적시에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에 대해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c) 정보주체가 제3자 수익자 권리를 제3조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락해야 합니다:

(i) 회원국 내 상시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감독 당국 또는 제13조에 따른 관할 감독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ii) 제18조의 의미 내에서 관할 법원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

(d) 양 당사자는 규정 (EU) 2016/679의 제80조 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비영리 단체, 조직 또는 협회가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해당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의 선택이 해당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12조

책임

(a) 각 당사자는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에게 책임을 지며, 정보주체는 데이터 국외수령자 또는 그 하위 수탁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제3자 수익자 권리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야기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 (b)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정보주체에게 책임을 지며, 정보주체는 데이터 국외이전자 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또는 그 하위 수탁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제3자 수익자 권리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야기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책임과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개인정보처리자를 대리하는 수탁자인 경우, 해당되는 경우 규정 (EU) 2016/679 또는 규정 (EU) 2018/1725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d) 양 당사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또는 그 하위 수탁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c)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손해에 대한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일부를 다시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e)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둘 이상의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모든 책임 당사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 양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e)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금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g)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위 수탁자의 행위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13조

감독

(a)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EU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 (EU) 2016/679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감독 당국은 부속서 I.C에 명시된 대로 관할 감독 당국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EU 회원국에 설립되지 않았지만 제3조 2항에 따라 규정 (EU) 2016/679의 적용 지역 범위에 속하고, 규정 (EU) 2016/679 제27조 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규정 (EU) 2016/679 제27조 1항의 의미에 따른 대리인이 설립된 회원국의 감독 당국은 부속서 I.C에 명시된 대로 관할 감독 당국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EU 회원국에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규정 (EU) 2016/679 제27조 2항에 따라 대표자를 임명할 필요 없이 제3조 2항에 따라 규정 (EU) 2016/679의 적용 지역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거나 그 행위가 모니터링되는 정보주체가 위치한 회원국 중 하나의 감독 당국은 부속서 I.C에 명시된 대로 관할 감독 당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서 관할 감독 기관의 관할권에 복종하고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문의에 응답하고 감사에 응하며 시정 및 보상 조치를 포함하여 감독 기관이 채택한 조치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서면 확인서를 감독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III - 공공 기관의 접근 시 현지 법률 및 의무

제14조

본 조항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법률 및 관행

(a)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공개 요건 또는 공공 기관의 접근을 승인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제3국의 법률 및 관행이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사유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본질을 존중하고 규정 (EU) 2016/679 제23조 1항에 열거된 목적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 것을 초과하지 않는 법률 및 관행이 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이해에 근거합니다.

(b) 양 당사자는 (a)항의 보증을 제공함에 있어 특히 다음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음을 선언합니다:

(i) 처리 체인의 길이, 관련된 행위자 수 및 사용된 이전 채널을 포함한 이전의 구체적인 상황, 재이전 의도, 수령자 유형, 처리 목적, 이전된 개인정보의 범주 및 형식, 이전이 발생하는 경제 부문, 이전된 데이터의 저장 위치;

(ii) 이전의 특정 상황 및 적용 가능한 제한 및 보호 조치에 비추어 관련성이 있는 제3국의 법률 및 관행(공공 기관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의 접근을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4]);

(iii) 이전 중 및 목적지 국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관련 계약적, 기술적 또는 조직적 보호조치.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b)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 국외이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보증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d) 양 당사자는 (b)항에 따른 평가를 문서화하고 요청 시 관할 감독 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e)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에 동의한 후 계약 기간 동안 제3국 법률의 변경 또는 (a)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의 적용을 나타내는 조치(예: 공개 요청)를 포함하여 (a)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f) (e)항에 따른 통지 후 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더 이상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해당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채택할 적절한 조치(예: 보안 및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조직적 조치)를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관할 감독 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데이터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본 조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둘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만 이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6조(d) 및 (e)항이 적용됩니다.

제15조

공공 기관의 접근 시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의무

15.1 통지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i) 사법 당국을 포함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해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러한 통지에는 요청된 개인정보, 요청 기관, 요청의 법적 근거 및 제공된 응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ii)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 기관의 직접 접근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통지에는 국외수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금지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문서화할 것에 동의합니다.

(c)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수신된 요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정보(특히 요청 횟수, 요청된 데이터 유형, 요청 기관,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및 그러한 이의 제기 결과 등)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d)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계약 기간 동안 (a)항부터 (c)항에 따른 정보를 보존하고 요청 시 관할 감독 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e) (a)항부터 (c)항의 내용은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는 제14조 (e)항 및 제16조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2 적법성 및 데이터 최소화 검토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공개 요청의 적법성, 특히 요청하는 공공 기관에 부여된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중한 평가 후, 해당 요청이 목적지 국가의 법률, 국제법상 관련 의무 및 국제관례 원칙에 따라 위법이라고 간주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해당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관할 사법 기관이 그 타당성을 결정할 때까지 요청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 규칙에 따라 요구될 때까지 요청된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제14조(e)항에 따른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법적 평가와 공개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문서화하고, 대상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서를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관할 감독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공개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공개 요청에 응할 때 허용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섹션 IV - 최종 조항

제16조

조항 미준수 및 계약의 해지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준수가 다시 보장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제14조 (f)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본 조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b)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후 1개월 이내에 본 조항의 준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ii)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을 실질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또는

(iii)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에 관한 관할 법원 또는 감독 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관할 감독 당국에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이 두 개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만 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d) (c)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전된 개인정보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선택에 따라 즉시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반환되거나 전체가 삭제됩니다. 데이터 사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데이터 삭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반환될 때까지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적용되는 현지 법률이 이전된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할 것이며 해당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기간 동안만 데이터를 처리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e)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 조항에 구속되기로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 유럽연합(EU) 2016/679 규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본 조항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결정을 채택한 경우; (ii)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법체계에 EU 2016/679 규정이 포함된 경우. 이는 규정 (EU) 2016/679에 따라 해당 처리에 적용되는 다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본 조항은 해당 법률이 제3자 수익자 권리를 허용하는 경우 EU 회원국 중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양 당사자는 아일랜드 법이 적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18조

포럼 및 관할권 선택

(a) 본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EU 회원국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b) 양 당사자는 아일랜드 법원이 그 법원이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c) 정보주체는 또한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를 상대로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회원국 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부록

부속서 I

A. 당사자 목록

데이터 국외이전자(들):

이름: 계약에 명시된 고객 이름.

주소: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주소.

담당자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연락 담당자.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데이터와 관련된 활동: 계약에 따른 고객

역할(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개인정보처리자

데이터 국외수령자(들):

이름: 계약에 명시된 팔란티어의 이름.

주소: 계약에 명시된 팔란티어의 주소.

담당자 이름, 직위 및 연락처: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palantir.com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데이터와 관련된 활동: 계약에 따른 공급업체

역할(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수탁자

B. 이전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정보주체의 범주

별첨 B 및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의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범주”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주

별첨 B의 “고객 개인정보 범주” 및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전송되는 민감정보(해당되는 경우) 및 해당 정보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되는 제한사항 또는 보호조치 (예: 엄격한 목적 제한, 접근 제한(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 포함), 접근 기록 유지, 제3국 재이전에 대한 제한 또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 등).

인종 또는 민족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정보, 생체정보, 건강, 자연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고객 개인정보에 이러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고객 또는 고객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기 위해 팔란티어에 제공되는 경우 포함)를 드러내는 개인정보는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러한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러한 민감정보를 팔란티어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보호 조치 및 제한 사항은 부속서 II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전 빈도(예: 데이터가 일회성으로 이전되는지 또는 지속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처리의 성격

별첨 B의 “처리의 성격 및 목적”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 이전 및 추가 처리의 목적

별첨 B의 “처리의 성격 및 목적”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할 기간,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

별첨 B의 “처리 기간”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하위) 수탁자로의 이전의 경우 처리의 주제, 성격 및 기간 명시.

별첨 B의 “하위 수탁자에 의한 처리의 대상, 성격 및 기간”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C. 관할 감독 기관

제13조에 따른 관할 감독 기관의 식별제13조에 따라 결정되고 https://edpb.europa.eu/about-edpb/about-edpb/members_en(수시로 업데이트됨)에 추가로 명시된 감독 기관

부속서 II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및 목적,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시행하는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관련 인증 포함)에 대한 설명.

보안 문서에 추가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DPA 제4.1조에 설명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의 특징 및 기능, 그리고 본 DPA 제4.3조 (c)항에 설명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하위) 수탁자로의 이전의 경우, (하위)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탁자에서 하위 수탁자로의 이전의 경우 데이터 국외 이전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취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에 대한 설명

본 DPA 제4.1조에 설명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서, 보안 문서에 추가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별첨 D의 부속서 2

표준 계약 조항

모듈 3: 수탁자 대 수탁자

섹션 I

제1조

목적 및 범위

(a) 본 표준 계약 조항의 목적은 제3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시, 개인정보 처리 및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16년 4월 27일 이사회 규정 (EU) 2016/679(GDPR)([5])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b) 당사자:

(i) 부속서 I.A에 나열된 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 기관, 기관 또는 기타 단체(이하 '법인')(이하 각 '데이터 국외이전자').

(ii) 부속서 I.A에 나열된 바와 같이 본 조항의 당사자인 다른 법인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데이터 국외이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신하는 제3국의 법인(이하 각 '데이터 국외수령자').

이 표준 계약 조항(이하 '**본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c) 본 조항은 부속서 I.B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이전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d) 본 표준 계약 조항에 포함된 부속서를 담고 있는 부록은 본 조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합니다.

제2조

조항의 효력 및 불변성

(a)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 제46조 제1항 및 제46조 제2항(c)에 따라 집행 가능한 정보주체 권리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며, 개인정보처리자 대 수탁자, 또는 수탁자 대 수탁자로의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부록의 적절한 모듈 선택 또는 정보 추가 또는 업데이트를 제외하고 수정되지 않는 한 규정 (EU) 2016/679 제28조 제7항에 따른 표준 계약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본 조항에 명시된 표준 계약 조항을 더 광범위한 계약에 포함하거나 다른 조항 또는 추가 보호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항이 직간접적으로 본 조항과 모순되거나 정보주체의 기본권 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b)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에 따라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제3자 수익자

(a)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제3자 수익자로서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대해 본 조항을 발동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i)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ii) 제8.1조 (a), (c) 및 (d) 및 제8.9조 (a), (c), (d), (e), (f) 및 (g);

(iii) 제9조 (a), (c), (d) 및 (e);

(iv) 제12조 (a), (d) 및 (f);

(v) 제13조

(vi) 제15.1조 (c), (d) 및 (e);

(vii) 제16조 (e);

(viii) 제18조 (a) 및 (b).

(b) (a)항은 규정 (EU) 2016/679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제4조

해석

- (a) 본 조항에서 규정 (EU) 2016/679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는 해당 규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b)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의 조항에 비추어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 (c) 본 조항은 규정 (EU) 2016/679에 규정된 권리 및 의무와 상충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우선 순위

본 표준계약조항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관련 계약의 조항들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본 표준계약조항이 우선합니다.

제6조

이전(들)의 세부 사항

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 특히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주 및 이전 목적은 부속서 I.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

도킹 조항

[의도적으로 비워둠]

섹션 II - 당사자의 의무

제8조

데이터 보호 안전장치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증합니다.

8.1 지침

- (a)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처리 전에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전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문서화된 지침과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추가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계약 기간 동안 데이터 처리에 관한 추가 문서화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이러한 지침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즉시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침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 (d)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데이터 국외이전자 간의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른 계약 또는 기타 법률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부과했음을 보증합니다([1]).

8.2 목적 제한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 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전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추가 지침이 없는 한, 부속서 I.B.에 명시된 이전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8.3 투명성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요청 시 당사자가 작성한 부록을 포함하여 본 조항의 사본을 정보주체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사본을 공유하기 전에 부록 텍스트의 일부를 편집할 수 있지만,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의미 있는 요약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정보주체에게 편집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편집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8.4 정확성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수신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와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8.5 데이터의 처리 및 삭제 또는 반환 기간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의한 처리는 부속서 I.B.에 명시된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며, 처리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후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처리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인증하거나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처리한 모든 개인정보를 반환하고 기존 사본을 삭제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반환될 때까지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적용되는 현지 법률이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하고 해당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기간 동안만 데이터를 처리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는 제14조, 특히 제14조(e)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제14조(a)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내내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요건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8.6 처리의 보안

(a) 데이터 국외수령자 및 이전 중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해당 데이터의 우발적 또는 위법적인 파기, 분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이하 '개인정보 침해')으로 이어지는 보안 위반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적절한 보안 수준을 평가할 때 기술 수준, 구현 비용,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및 목적,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특히 이전 중을 포함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암호화 또는 가명처리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명 처리의 경우, 개인정보를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추가 정보는 가능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독점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합니다. 본 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최소한 부속서 II에 명시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계약의 이행,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엄격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소속 직원에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을 했거나 적절한 법적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

수령자는 또한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 침해의 성격에 대한 설명(가능한 경우 해당 데이터 주체 및 개인 데이터 기록의 범주와 대략적인 수 포함), 예상되는 결과, 데이터 침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데이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거나 제안한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최초 통지에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부당한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d)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규정 (EU) 2016/67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국외이전자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하며, 특히 처리의 성격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관찰 감독 기관 및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 통지해야 합니다.

8.7 민감정보

이전 대상에 인종 또는 민족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드러내는 개인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유전정보 또는 생체정보, 건강 또는 개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 형사처벌 및 범죄와 관련된 정보 (이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부속서 I.B에 설명된 특정 제한 및 추가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8.8 재이전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전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문서화된 지침에 따라 제3자에게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가 해당 모듈에 따라 본 조항의 구속을 받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 외부에 위치한 제3자([6]) (데이터 국외수령자와 동일한 국가 또는 다른 제3국, 이하 '재 이전')에게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i) 재이전이 해당 이전에 적용되는 규정(EU) 2016/679 제45조에 따른 적정성 결정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 이루어지며, 해당 적정성 결정이 재이전을 포함하는 경우;
- (ii) 제3자가 규정 (EU) 2016/679의 46조 또는 47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 (iii) 특정 행정, 규제 또는 사법 절차의 맥락에서 법적 청구의 성립,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재이전이 필요한 경우; 또는
- (iv) 정보주체 또는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이전이 필요한 경우.

재이전은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에 따른 다른 모든 보호 조치, 특히 목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8.9 문서화 및 규정 준수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에 따른 처리와 관련된 데이터 국외이전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문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b) 당사자는 본 조항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처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의무의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제공하고,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d)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이 적용되는 처리 활동에 대한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감사를 합리적인 간격으로 또는 규정 미준수의 징후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이에 기여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요청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감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보유한 관련 인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가 수행되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그 결과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f)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거나 독립 감사인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구내 또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점검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합리적인 통지와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g) 양 당사자는 감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b)항 및 제(c)항에 언급된 정보를 요청 시 관할 감독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하위 수탁자의 사용

(a) 옵션 2 일반 서면 승인: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합의된 목록에 있는 하위 수탁자의 참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 승인을 받습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의 추가 또는 교체를 통해 해당 목록에 의도된 변경 사항을 최소 14일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하위 수탁자가 참여하기 전에 그러한 변경에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의 참여 사실을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특정 처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하위 수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제3자 수익자 권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를 구속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서면 계약을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양 당사자는 본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8.8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가 본 조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하위 수탁자 계약서 사본 및 이후 수정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사본을 공유하기 전에 계약서의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d)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위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가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하위 수탁자와 제3자 수익자 조항을 합의하여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사실상 사라지거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파산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하위 수탁자 계약을 해지하고 하위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반환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해당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모든 요청을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와 협력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규정 (EU) 2016/679 또는 규정 (EU) 2018/1725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에 응답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절히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정도뿐만 아니라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 처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부속서 II에 명시해야 합니다.

(c) (a)항 및 (b)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전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구제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불만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연락 창구를 개별 통지하거나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b) 본 조항의 준수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와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문제를 적시에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분쟁에 대해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c) 정보주체가 제3자 수익자 권리를 제3항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의 다음의 결정을 수락해야 합니다:

(i) 회원국 내 상시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감독 당국 또는 제13조에 따른 관할 감독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ii) 제18조의 의미 내에서 관할 법원에 분쟁을 회부하는 것.

(d) 양 당사자는 규정 (EU) 2016/679의 제80조 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비영리 단체, 조직 또는 협회가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e)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해당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의 선택이 해당 법률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12조

책임

(a) 각 당사자는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정보주체에게 책임을 지며, 정보주체는 데이터 국외수령자 또는 그 하위 수탁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제3자 수익자 권리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야기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c) (b)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정보주체에게 책임을 지며, 정보주체는 데이터 국외이전자 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또는 그 하위 수탁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제3자 수익자 권리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야기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책임과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개인정보처리자를 대리하는 수탁자인 경우, 해당되는 경우 규정 (EU) 2016/679 또는 규정 (EU) 2018/1725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d) 양 당사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또는 그 하위 수탁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c)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손해에 대한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일부를 다시 청구할 권

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e) 본 조항의 위반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둘 이상의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모든 책임 당사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 양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e)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금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g)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위 수탁자의 행위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13조

감독

(a)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EU 회원국에 설립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규정 (EU) 2016/679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감독 당국은 부속서 I.C에 명시된 대로 관할 감독 당국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EU 회원국에 설립되지 않았지만 제3조 2항에 따라 규정 (EU) 2016/679의 적용 지역 범위에 속하고 규정 (EU) 2016/679 제27조 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규정 (EU) 2016/679 제27조 1항의 의미에 따른 대리인이 설립된 회원국의 감독 당국은 부속서 I.C에 명시된 대로 관할 감독 당국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EU 회원국에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규정 (EU) 2016/679 제27조 2항에 따라 대표자를 임명할 필요 없이 제3조 2항에 따라 규정 (EU) 2016/679의 적용 지역 범위에 속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거나 그 행위가 모니터링되는 정보주체가 위치한 회원국 중 하나의 감독 당국은 부속서 I.C에 명시된 대로 관할 감독 당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서 관할 감독 기관의 관할권에 복종하고 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특히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문의에 응답하고 감사에 응하며 시정 및 보상 조치를 포함하여 감독 기관이 채택한 조치를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서면 확인서를 감독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섹션 III - 공공 기관의 접근 시 현지 법률 및 의무

제14조

본 조항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법률 및 관행

(a)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공개 요건 또는 공공 기관의 접근을 승인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제3국의 법률 및 관행이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사유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이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본질을 존중하고 (EU) 2016/679 규정 23조 1항에 열거된 목적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 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 것을 초과하지 않는 법률 및 관행이 본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이해에 근거합니다.

(b) 양 당사자는 (a)항의 보증을 제공함에 있어 특히 다음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음을 선언합니다:

(i) 처리 체인의 길이, 관련된 행위자 수 및 사용된 이전 채널을 포함한 이전의 구체적인 상황, 재이전 의도, 수령자 유형, 처리 목적, 이전된 개인정보의 범주 및 형식, 이전이 발생하는 경제 부문, 이전된 데이터의 저장 위치;

(ii) 이전의 특정 상황 및 적용 가능한 제한 및 보호 조치에 비추어 관련성이 있는 제3국의 법률 및 관행(공공 기관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의 접근을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8]);

(iii) 이전 중 및 목적지 국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관련 계약적, 기술적 또는 조직적 보호조치.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b)항에 따른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데이터 국외이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보증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d) 양 당사자는 (b)항에 따른 평가를 문서화하고 요청 시 관할 감독 기관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e)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에 동의한 후 계약 기간 동안 제3국 법률의 변경 또는 (a)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의 적용을 나타내는 조치(예: 공개 요청)를 포함하여 (a)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또는 관행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해당 통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f) (e)항에 따른 통지 후 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할 적절한 조치(예: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위한 기술적 또는 조직적 조치)를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관할 감독 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데이터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본 조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둘 이상의 당사자를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만 이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6조(d) 및 (e)항이 적용됩니다.

제15조

공공 기관의 접근 시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의무

15.1 통지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 가능한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도움을 받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i) 사법 당국을 포함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해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러한 통지에는 요청된 개인정보, 요청 기관, 요청의 법적 근거 및 제공된 응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는

(ii)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공공 기관의 직접 접근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통지에는 국외수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해당 통지의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가능한 한 빨리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금지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요청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문서화할 것에 동의합니다.

(c)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계약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수신된 요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관련 정보(특히 요청 횟수, 요청된 데이터 유형, 요청 기관,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 및 그러한 이의 제기 결과 등)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d)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a)항부터 (c)항에 따른 정보를 계약 기간 동안 보존하고 요청 시 관할 감독 당국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e) (a)항부터 (c)항은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는 제14조 (e)항 및 제16조에 따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2 적법성 및 데이터 최소화 검토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공개 요청의 적법성, 특히 요청하는 공공 기관에 부여된 권한 내에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중한 평가 후 해당 요청이 목적지 국가의 법률, 국제법상 관련 의무 및 국제관례 원칙에 따라 불법이라고 간주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해당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관할 사법 기관이 그 타당성을 결정할 때까지 요청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 규칙에 따라 요구될 때까지 요청된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제14조(e)항에 따른 데이터 국외수령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법적 평가와 공개 요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문서화하고, 목적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서를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관할 감독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c)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공개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공개 요청에 응답할 때 허용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섹션 IV - 최종 조항

제16조

조항 미준수 및 계약의 해지

(a)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b)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준수가 다시 보장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제14조(f)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c)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본 조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i)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b)항에 따라 데이터 국외수령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후 1개월 이내에 본 조항의 준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ii)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을 실질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또는

(iii)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에 따른 의무에 관한 관할 법원 또는 감독 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관할 감독 당국 및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 데이터 국외이전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만 이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d) (c)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전된 개인정보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의 선택에 따라 즉시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반환되거나 전체가 삭제됩니다. 데이터 사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데이터 국외이전자에게 데이터 삭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반환될 때까지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국외수령자에게 적용되는 현지 법률이 이전된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경우, 데이터 국외수령자는 본 조항을 계속 준수할 것이며 해당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기간 동안만 데이터를 처리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e) 각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 조항에 구속되기로 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i) 유럽연합(EU) 2016/679 규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본 조항이 적용되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결정을 채택한 경우, (ii)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법체계에 EU 2016/679 규정이 포함된 경우. 이는 규정 (EU) 2016/679에 따라 해당 처리에 적용되는 다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7조

준거법

본 조항은 해당 법률이 제3자 수익자 권리를 허용하는 경우 EU 회원국 중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양 당사자는 아일랜드 법이 적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18조

포럼 및 관할권 선택

(a) 본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EU 회원국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b) 양 당사자는 아일랜드 법원이 그 법원이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c) 정보주체는 또한 데이터 국외이전자 및/또는 데이터 국외수령자를 상대로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회원국 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 양 당사자는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부록

부속서 I

A. 당사자 목록

데이터 국외이전자(들):

이름: 계약에 명시된 고객 이름.

주소: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주소.

담당자 이름, 직위 및 연락처 정보: 계약에 명시된 고객의 연락 담당자.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데이터와 관련된 활동: 계약에 따른 고객

역할(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수탁자

데이터 국외수령자(들):

이름: 계약에 명시된 팔란티어의 이름.

주소: 계약에 명시된 팔란티어의 주소.

담당자 이름, 직위 및 연락처: 데이터 보호 책임자, dpo@alantir.com

본 조항에 따라 이전된 데이터와 관련된 활동: 계약에 따른 공급업체

역할(개인정보처리자/수탁자): 수탁자

B. 이전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정보주체의 범주

별첨 B 및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의 “개인정보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범주”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범주

별첨 B의 “고객 개인정보 범주” 및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전송되는 민감정보(해당되는 경우) 및 해당 정보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되는 제한사항 또는 보호조치 (예: 엄격한 목적 제한, 접근 제한(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원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 포함), 접근 기록 유지, 제3국 재이전에 대한 제한 또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 등).

인종 또는 민족 출신,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 유전정보, 생체정보, 건강, 자연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 (고객 개인정보에 이러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고객 또는 고객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또는 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기 위해 팔란티어에 제공되는 경우 포함)를 드러내는 개인정보는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러한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러한 민감정보를 팔란티어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보호 조치 및 제한 사항은 부속서 II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전 빈도(예: 데이터가 일회성으로 이전되는지 또는 지속적으로 이전되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처리의 성격

별첨 B의 “처리의 성격 및 목적”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 이전 및 추가 처리의 목적

별첨 B의 “처리의 성격 및 목적”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보유할 기간,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기준

별첨 B의 “처리 기간”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하위) 수탁자로의 이전의 경우 처리의 주제, 성격 및 기간도 명시

별첨 B의 “하위 수탁자에 의한 처리의 대상, 성격 및 기간” 및 해당되는 경우 해당 추가 서비스에 대한 기타 관련 별첨에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C. 관할 감독 기관

제13조에 따른 관할 감독 기관의 식별

제13조에 따라 결정되고 https://edpb.europa.eu/about-edpb/about-edpb/members_en(수시로 업데이트됨)에 추가로 명시된 감독 기관

부속서 II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처리의 성격, 범위, 맥락 및 목적, 자연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시행하는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관련 인증 포함)에 대한 설명.

보안 문서에 추가로 설명된 바와 같이, 본 DPA에 설명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특징 및 기능, 그리고 본 DPA에 설명된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하위) 수탁자로의 이전의 경우, (하위)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수탁자에서 하위 수탁자로의 이전의 경우 데이터 국외이 전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취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에 대한 설명

보안 문서에 추가로 설명된 바와 같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은 본 DPA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유럽연합 기관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활동하는 규정 (EU) 2016/679의 적용을 받는 수탁자인 경우, 규정 (EU) 2016/679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수탁자(하위 수탁)를 고용할 때 본 조항을 준수하면 유럽 연합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18년 10월 23일 이사회 규정 (EU) 2018/1725의 29조 4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 사무소 및 기관 및 그러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 (EC) 번호 45/2001 및 결정 번호 1247/2002/EC 폐지 (OJ L 295, 21.11.2018, 39페이지), 이러한 조항과 규정 (EU) 2018/1725 제29조 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기타 법적 행위에 명시된 데이터 보호 의무가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는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가 결정 2021/915에 포함된 표준 계약 조항에 의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EEA 협정)은 유럽연합의 내부 시장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3개 EEA 국가로 확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EU) 2016/679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법은 EEA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협정의 부속서 XI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EEA에 위치한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본 조항의 목적상 향후 이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이 요건은 7항에 따라 하위 수탁자가 해당 모듈에 따라 본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법률 및 관행이 본 조항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평가의 일부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공공 기관의 공개 요청에 대한 이전 사례 또는 그러한 요청이 없었을 때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관련성 있고 문서화된 실무 경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 정보가 제3자와 합법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경우, 실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고위 경영진 수준에서 인증된 내부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에 의존하여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는 다른 관련성 있고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신뢰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비중

을 갖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 당사자는 판례 및 독립 감독 기관의 보고서와 같이 동종 업계 내 요청의 존재 여부 및/또는 실제 법 적용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기타 접근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 실제 경험이 입증되고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5] 데이터 국외이전자가 유럽연합 기관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활동하는 규정 (EU) 2016/679의 적용을 받는 수탁자인 경우, 규정 (EU) 2016/679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수탁자(하위 수탁)를 고용할 때 본 조항을 준수하면 유럽 연합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2018년 10월 23일 이사회 규정 (EU) 2018/1725의 29조 4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기관, 사무소 및 기관 및 그러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 (EC) 번호 45/2001 및 결정 번호 1247/2002/EC 폐지 (OJ L 295, 21.11.2018, 39페이지), 이러한 조항과 규정 (EU) 2018/1725 제29조 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또는 기타 법적 행위에 명시된 데이터 보호 의무가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는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가 결정 2021/915에 포함된 표준 계약 조항에 의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EEA 협정)은 유럽연합의 내부 시장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3개 EEA 국가로 확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EU) 2016/679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법은 EEA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협정의 부속서 XI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국외수령자가 EEA에 위치한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본 조항의 목적상 재전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이 요건은 7항에 따라 하위 처리자가 해당 모듈에 따라 본 조항을 준수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습니다.

[8] 이러한 법률 및 관행이 본 조항 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평가의 일부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공공 기관의 공개 요청에 대한 이전 사례 또는 그러한 요청이 없었을 때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관련성 있고 문서화된 실무 경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 정보가 제3자와 합법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경우, 실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고위 경영진 수준에서 인증된 내부 기록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에 의존하여 데이터 수입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이는 다른 관련성 있고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신뢰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비중을 갖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양 당사자는 판례 및 독립 감독 기관의 보고서와 같이 동종 업계 내 요청의 존재 여부 및/또는 실제 법 적용에 관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기타 접근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해 실제 경험이 입증되고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